##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6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서천호·서명옥·김상욱

김태호 • 박수영 • 정성국

김용태 • 이만희 • 박충권

백종헌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,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·유통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 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4(우주개발사업 성과의	제18조의4(우주개발사업 성과의
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)	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
	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
	는 기업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
	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